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4
Compliance
Program

구 매 부



자율준수 편람 제 · 개정 이력

구 분	일 시	개정내용
제 정	24.03.04	자율준수 편람 제정
1차 개정	24.04.23	공정위 주관/조정원 주최 CP등급설명회(02.23)와 찾아가는 CP설명회 변경내용 및 추가 수록 1. 평가항목 및 세부측정지표 변경 2. 하도급 대금연동제 및 분쟁조정제도 및 분쟁조정사례
2차 개정	24.07.10	24년 상반기 주요정책동향 및 주요제재사례 추가 등재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만보중공업 대표 남양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만보중공업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 ESG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경영 목표는 가시적인 경영 성과와 이익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ESG 핵심요소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전담 부서를 통해 CP 문화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만보중공업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경영이 어렵습니다. 오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은 CP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자율준수 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CP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주)만보중공업 대표이사 남양준

발간사

만보인 그리고 만보 고객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결정하고 2024년 1월 2일 대표님께서 직접 신년회를 통해 CP도입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ESG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각오의 천명이었습니다.

CP전담 관리자를 새로이 임용하고 전담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CP레터 발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CP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이 실제 업무에 폭넓게 사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충실한 준법지침서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숙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범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만보중공업·신뢰받는 만보중공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보인과 만보의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만보중공업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박 형 배

목차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CP의 의의
2. CP제도의 연혁
3. CP관련 최신 판례
4. CP등급평가 개요
5. 평가단계별 주요내용
6. CP법제화 내용
7. CP제도개선 방향
8.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
9. 평가항목의 구성 및 취지
10. CP등급평가 FAQ
11. CP전담 조직
12. CP추진 계획
13. CP운영제도 및 방침

PART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임직원
행동가이드

1. 기본원칙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3. 하도급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4.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5. 약관규제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6.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법규

PART 3.
공정거래법 해설

1. 공정거래법 개관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4. 부당한 지원행위

PART 4.
하도급법 해설

1. 하도급법 개관
2. 계약체결 관련사항
3. 하도급 대금 관련사항
4. 하도급 계약이행 관련사항
5.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사항
6. 기술탈취 금지
7. 기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9. 하도급대금 연동제

PART 5.
상생협력법 해설

1. 납품대금연동제 개관
2. 납품대금연동제 용어정리
3. 납품대금연동제 절차
4. 납품대금 약정시 작성방법
5. 납품대금연동표 작성 예시
6. Q&A로 이해하는 납품대금연동제

PART 6.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

1. 서설
2.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3. 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PART 7.
부록

1. 최근 정책동향
 2. 주요제재사례
-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CP의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1.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
※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23년 말 기준 742개 기업이 CP를 도입하여
운영중

2. CP의의

정부

과도한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업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

CP 도입 현황 :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	'0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도 입 기 업	377	486	552	587	633	637	654	678	693	696	709	717	734	742

2. CP제도의 연혁

- 01년 - 13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발족
→ 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7.5)
- 02년 -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최고 40%)·공표명령(1단계 하향) 감경, 고발면제 등
- 06년 - CP 등급 평가제를 도입
- 08년 - 10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등급평가 결과 A이상 과징금(10~20%) 및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고발면제 폐지)
- 10년 - 3월, 등급평가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 변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3년 - 7월,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기업에는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평가제도 개선
- 14년 - 2월, 법위반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목적으로 CP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 지속 제기되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CP 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부여되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폐지
- 19년 - 법위반 기업 CP 등급평가 신청제한 삭제, 등급평가 절차 2단계, 평가등급 6등급 개편 등
- 23년 - CP의 법적근거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6.20)

3. CP관련 최신 판례

[대법원 판결]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

회사가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017다222368: ' 21.11.25)

[대법원 판결] 사내는 물론 사외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인정!

회사가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시민단체와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1다279347: ' 22.5.12)

☞ 기업의 예방적 Compliance system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

4. CP등급평가 개요

1.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2. CP등급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평가절차를 주관하며, 실제 평가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담당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

※ 외부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인(총6명) 포함

3. CP등급평가 기준 (공통기준)



4. CP등급평가 기준(기업(기관) 구분별)

1) 대기업 (7개평가항목, 20개평가지표, 48개세부측정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공공기관 (7개평가항목, 20개평가지표, 47개세부측정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중견기업 (7개평가항목, 17개평가지표, 40개세부측정지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 ● 중견 해당한다는 내용’ 이 표시된 전자공시시스템공시용 사업보고서 제출

5. 등급 및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 「CP운영 · 평가에 관한 규정」 참고 ·

CP평가등급 (유효기간:2년)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 감경 (최대)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여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 체 공표 기간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2단계 하향 조정	단축	15%(20%)	2년	2년 연속 취득시	○
AA(우수) (80이상-90미만)	1단계 하향 조정		10%(15%)	1년 6개월	2년 연속 취득시	○
A(비교적우수) (70이상-80미만)			-	1년	-	○
B(보통) (55이상-70미만)	-	-	-	-	-	-
C(미흡) (40이상-55미만)	-	-	-	-	-	-
D(매우미흡) (40미만)	-	-	-	-	-	-

6. 등급부여 현황

- 최근 5년간 평가 신청기업 66개 신청기업(기관) 중 59개 기업(기관)이 A등급 이상을 취득
- 취득시점 별 CP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음

※CP등급평가신청 기업(기관) 명단등의 자료는 비공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기업(기관) 수만 공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기업(기관)수	66	5	7	10	16	28	58
A등급이상 취득기업(기관)수	59	5	4	9	13	28	-

5. 평가단계별 주요 내용

1) 서류평가

서류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기업(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및 자율준수편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 가점평가 포함 ① CP등급평가 연속신청 기업 ② 협력업체 CP도입 및 운영 지원 ③ CP확산기여
현장 평가	- 평가위원이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응답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 내용과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 현장평가 결과는 기존 서류평가 점수의 조정 여부 및 점수 수준을 결정하는데 활용
심층면접 평가	-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가점 합산 결과 80점 이상(AA등급)인 기업 등에 대하여 실시 - 평가위원이 대상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CP실무자 등 기업 임직원에게 대하여 실시
평가점수 및 등급산정	- 서류평가, 가점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 평가신청연도 기준 2년 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기관)의 경우 최종 평가등급을 최대 2단계 조정

① 서류평가

- 평가위원이 기업(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자율준수편람을 바탕으로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세부측정지표별로 부여하는 점수는 7단계 척도로 구분 (100~0점)

척도	AAA	AA	A	B	C	D	F
점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55이상 70미만	40이상 55미만	1이상40 미만	0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이 평가기업(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서류평가척도 / 종합평가등급

서류평가척도 : 7개		종합평가등급 : 6개	
등급	점수 구간	등급	점수 구간
AAA	90이상 ~ 100이하	AAA	90이상 ~ 100이하
AA	80이상 ~ 90미만	AA	80이상 ~ 90미만
A	70이상 ~ 80미만	A	70이상 ~ 80미만
B	55이상~70미만	B	55이상~70미만
C	40이상~55미만	C	40이상~55미만
D	1이상~40미만	D	1이상~40미만
F	0	F	0

• 가점합산
• 현장평가
점수조정

※ 서류평가시 등급별 점수 구간의 **중위값** 부여

인센티브 부여 등급
(과징금 감경은 AA이상)

6. CP법제화 내용

- CP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23.6.20.)
- CP제도, 등급평가 기관 지정, 평가 우수기업 대상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등-

효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 예방 효과

주요 내용 1 : 자율준수 문화 확산 관련 '일반 규정' 신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하여 공정위가 기업의 CP도입 및 확산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120조의2 제1항) 공정위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주요 내용 2 : CP '정의' 및 운영상황 '평가' 근거 마련

✓ 정의:사업자가 공정위의 소관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을 명시
✓ 평가:사업자를 대상으로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 (제1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②공정위는 소관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3 : '인센티브' 제공 근거 규정 마련

✓ CP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등 감경 및 포상·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제120조의2 제4항)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4 : '평가비용' 규정

✓ CP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제120조의2 제5항)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5 :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규정

✓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평가업무 위탁 및 지정취소·정지*근거 신설

※ 평가기관의 부실 운영 발생에 대비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평가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

※ (제120조의3) 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CP제도개선 방향



8. 인센티브 제도개선 내용

1) 과징금 감경

①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상환(과거)

2002.1.2.	2004.4.1.	2007.12.31.	2008.10.24. ~2014.8.20.
▶ 1단계 -실질적 도입·운용:20% ▶ 2단계 -1단계충족 & 위반행위 시정:50%이내	▶ 1단계 -실질적 도입·운용:20% ▶ 2단계 -1단계충족 & 위반행위 시정:40%이내	▶ 1단계 -실질적 도입·운용:15% ▶ 2단계:등급평가 BB이상 -등급별 20~30%이내, 1회적용 ▶ 3단계:추가감경 -위반행위 시정:20%추가	▶ 등급평가 A이상 1회감경 -A : 10%이내 -AA : 15%이내 -AAA : 20%이내

②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상환(개정안)

평가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CP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

- ◆ 적용 등급
 - AA이상
- ※ 최근 5년간 등급평가 신청기업 중 AA이상 63%
- ◆ 적용 요건
 - 기본 감경 : AA이상의등급(AA:10%, AAA:15%이내)
 - 추가 감경 : 5%이내(최대 20% 이내 감경)
- ※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적용
- ◆ 적용 횟수
 - 1회에 한하여 적용

③ 적용 제외 요건 신설(개정안)

-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혜택 부여가 법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
- 적용제외 사유 폐지(과징금 ' 14.8, 시정조치 18.10), 현재는 직권조사 면제만 규정

◆ 필요성

- 폐지되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 재도입에 따라 적용 제외 요건 재신설 • 강화 필요

◆ 적용 요건

- ① CP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②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1,2,3,4,8호에 해당하는 행위)
- ④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기존 6개 요건 중 일부 요건 수정, 삭제(수정:부당한 공동행위, 삭제:과거3년간 3회 이상 위반하여 위반횟수 가중치 5점 이상)

④ 적용제외 요건(부당한 공동행위)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때는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⑤ 평가지표 및 가점 기준 개선

CP도입요건 충족여부, CP운영상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 지표개선

-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일부 지표 삭제를 통한 평가지표 축소
-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신설

구 분	기 준		변 경	
	평가지표 수	세부측정지표 수	평가지표 수	세부측정지표 수
대기업 (공기업포함)	22개	66개	20개	48개
공공기관				47개
중견·중소기업	17개	54개	17개	40개

8. CP평가항목 구성 및 취지

C 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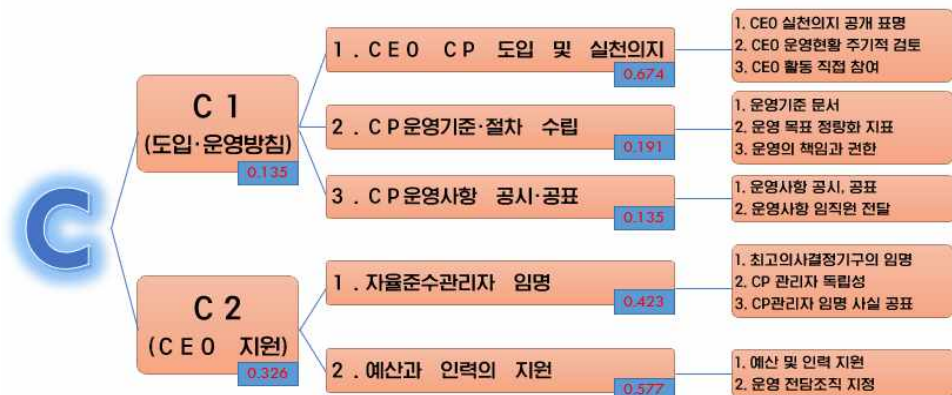


- ✓ CP특성상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CP운영을 위해서는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천의지 필요**
- ✓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개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를 인지하고 법규 준수 실천을 위한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필요
- ✓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직원들에게 공표**

C 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 CP의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필요**
- ✓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운영성과를 관리** 필요

◆ CP의 구축(2개 항목, 5개 평가지표, 13개 세부평가지표 : 가중치 0.461)



D 1. 자율준수편람

- ✓ 임직원에 대한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CP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부지침서 제작 필요
-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포함**
- 임직원들이 **시간·장소 제약없이 쉽게 활용 가능**
- 공정거래 법규, 정책의 변화 등을 상시 관찰하여 **지속적인 개정** 필요

D 2. 교육훈련 프로그램

- ✓ CP가 제대로 운영되고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교육 필요
- **최고경영자, 임원 및 법외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필요
- 교육 결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필요

◆ CP문화의 전파와 확산(2개 항목, 7개 평가지표, 14개 세부평가지표, 가중치 0.185)



O 1. 사전감시체계

- ✓ CP운영의 핵심은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예방과 감시(**내부감시체계 구축**)
- 일상 법 위반 상시 감시, 내부 신속 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
-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주기적 보고
- ① **위험평가**: 법 위반 사전 식별·예방 활동, 점검 및 취약점 조치(CP구축, 운영 단계)
- ② **사전업무협의제도**: 제3자와 거래나 계약시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 ③ **직접보고체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및 조치 시스템
- ④ **내부고발시스템**: 법 위반 행위자나 직간접적 확인자의 보고 및 조치 시스템

O 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 ✓ CP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능동적, 자발적 제도 준수 환경 조성 필요
- **공정거래 법규위반 행위자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 및 경계심 촉구
- CP 요소별 임직원 참여도 및 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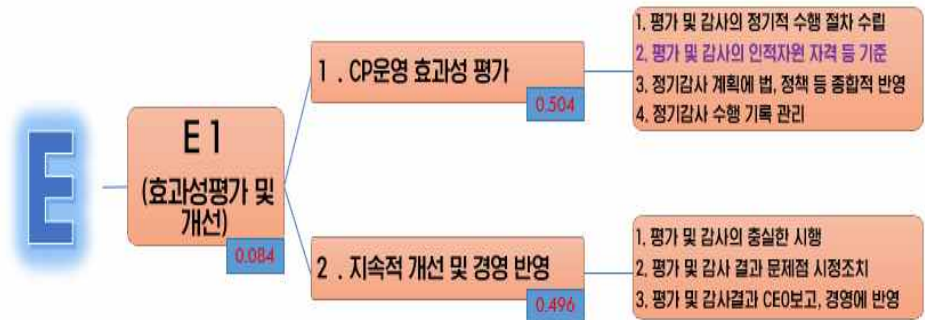


E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계획 수립, 추진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 기업 경영전반의 품질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 PDCA의 평가(Check), 개선(Action) 또는 ISO성과평가 및 개선

E

- ✓ CP 구축 기업의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하여
- 정기적인 CP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후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의 지체 없는 추진 필요



9. CP등급평가 FAQ

1) 2024년도 CP등급평가 일정

※ 금년도 평가일정

신청서 접수	3/15 ~ 4/12
서류평가	4월 ~ 6월
현장평가	7월 ~ 8월
심층면접평가	9월
결과통지(공정위)	10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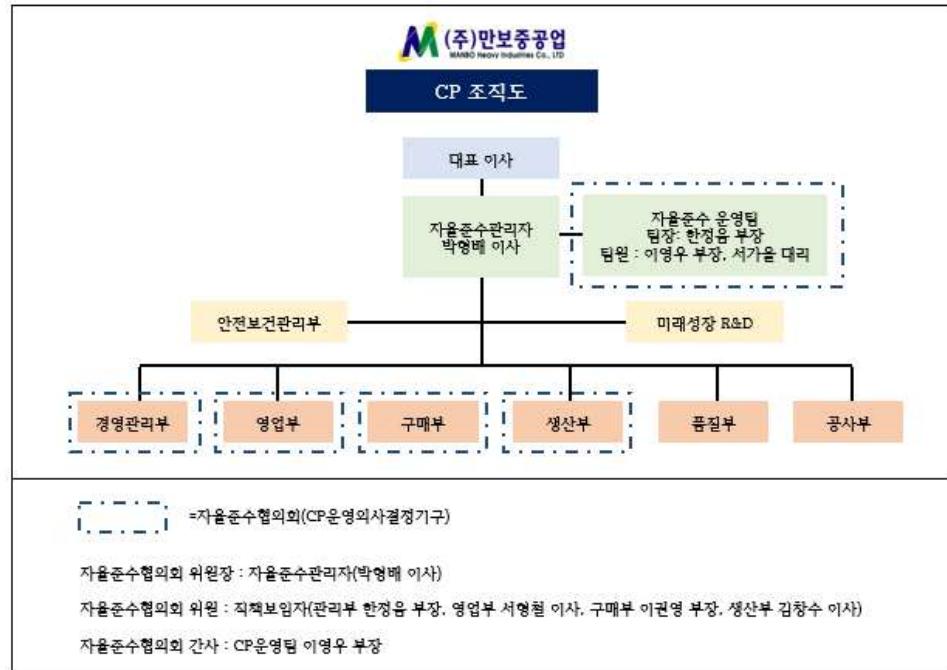
2) 최신 자료 위치 및 주요 내용

※ 참고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업무안내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 CP안내 / CP

게시판	게시물 제목	주요 내용
CP 자료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2024. 2. 2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 CP의 정의 및 도입 요건 • CP등급평가 관련(법 위반시 등급조정, 인센티브, 등급평가중 수여 등)
CP 자료실	CP등급평가 운영지침 (2024. 3. 29. 시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침] • CP등급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평가비용 등 • [별지] 신청서, 자율준수관리자 확인서, 실적보고서 양식 등 • [별표] 평가지표별 가중치, 생략지표, 가점 기준,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등
CP 안내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2024. 4.)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전문
CP 안내	[2024년]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및 작성지침	실적보고서 양식 및 작성지침

10 CP전담 조직

1) CP 전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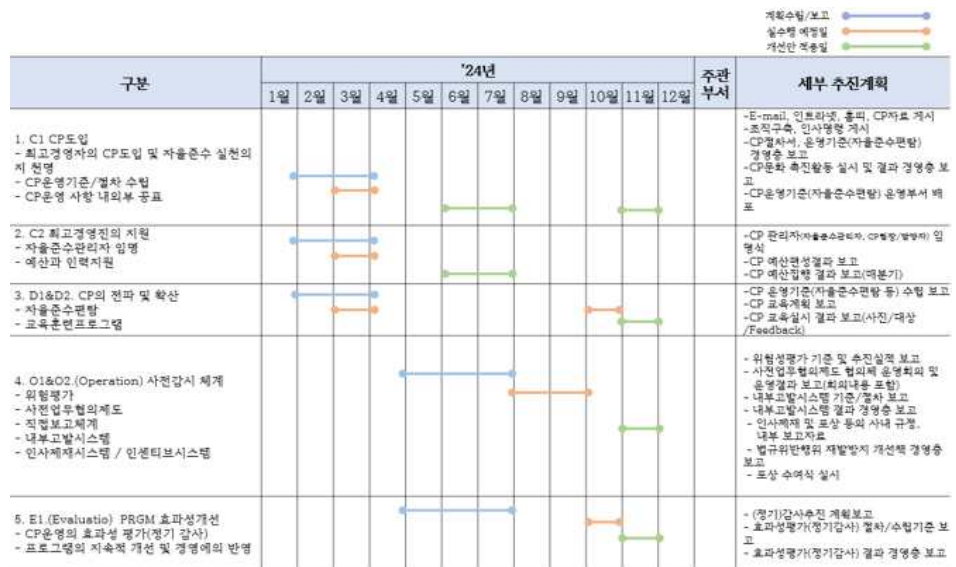
2) CP 전담 조직의 구성

구 분	CP 직책	성 명	직 급	임 기	시행일
CP운영팀	자율준수관리자	박형배	관리 이사	'24.2.8 ~ '24년 12월 정기 이사회	'24.2.8.
	자율준수운영팀장	한정음	관리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운영팀원	이영우	영업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운영팀원	서가을	관리 대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협의회 의장	박형배	관리 이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한정음	관리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서형철	영업 이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이권영	구매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허충훈	공사 전무	'24.3.25 ~ '24.12.31	'24.3.21.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김창수	생산 이사	'24.3.25 ~ '24.12.31	'24.3.21.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김원	미래성장 부장 (안전보건경영)	'24.3.25 ~ '24.12.31	'24.3.21.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최재종	품질 부장	'24.3.25 ~ '24.12.31	'24.3.21.
	자율준수협의회 간사	이영우	영업 부장	'24.2.8 ~ '24.12.31	'24.2.8.

11. CP 추진계획

1) CP 추진 계획

만보중공업 '24년 CP추진계획



2) CP 교육 계획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해 다음과 같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내용은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① CP교육 기본 방침

1.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CP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 참여율은 50% 이상 되어야 한다.
2. CP주관 부서는 교육별 의무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 미 이수자 및 CP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보수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4. CP관련 교육 미 이수자 및 CP위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보수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교육계획은 임원(5인) 의무수강부서(영업부, 구매부), CP운영팀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CP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교육내용 대상별로 수립한다.

② 대상별 교육계획

1. 임원 교육계획(반기별 1회 실시)
2. 의무수강부서 대상 교육계획 → 분기별1회 실시 ,

의무수강부서(영업부,구매부)

3. 전임직원 대상 교육계획 → 분기별1회 실시

12. CP운영 주요 제도 및 방침

① CP운영규정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해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하는 전반에 대한 근본규정,

② CP운영규정 세부운영지침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1. 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지침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인사제재규정3. 사전업무협의협의제도 운영지침과 교육계획서 등으로 구성된다

■ CP운영규정 제14조 (사전업무협의 제도)

- ① 회사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한다.
- ③ 제1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시행하는 규정에 따른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를 연 1회 이상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접 보고 체계

자율준수관리자는CP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그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회사 CP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대표이사·이사회 등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짐

■ CP운영규정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부서의 독립성)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내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 부서로 독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위 규정 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 및 직접 보고 체계를 확립·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④ 내부고발시스템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제한 없이 상시 제보할 수 있음

■ 내부고발 대상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임직원 이중취업 사례,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및 부당한 업무처리
- 기타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금품, 접대요구나 제공사실,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됨

⑤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은 회사 인사규정상의 제재 규정의 절차·내용에 따라 제재

PART 2.

공정거래자율준수 임직원 행동가이드

1. 기본원칙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주)만보중공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CP 운영규정) 제6조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만보중공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 (임직원의 의무)

제6조(임직원의 임무)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등과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별지 1]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자율준수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여, CP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전담부서 또는 법무 또는 감사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교육을 포함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법무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CP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
6.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①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 자율점검 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 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 예정사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지 말 것
- 입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 간 정보 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자율준수사전협의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내부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 하는 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②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점검 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행위(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 구입,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 요구 등)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말 것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 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말 것(끼워팔기 금지)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 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자 핵심 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 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 것
- 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③ 부당지원행위 분야

＝부당지원행위 자율점검 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규정은 당사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 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3. 하도급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율점검 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 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P 운영팀에 문의하여 확인받을 것
- 하도급계약이 체결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
- 공정위 표준 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자율준수협의회 또는 사전협의 방식으로의 사전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 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하도급 거래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도 조정할 것
-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 자료는 회사 내 기술 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 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지할 것

4. 하도급대금 연동제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하도급대금연동제 위반 행위 자율점검 지침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
- ※예외사유
 - 1)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 90일 이내
 - 2) 1회 발주당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
 - 3)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
-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고, 회의 또는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
- 연동에 관한 약정을 임의로 취소/변경하지 말 것

5. 약관규제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약관규제법 자율점검 지침

-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사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자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이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이 자사에게 유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 제기 등 재판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당사 적용
공정거래법규

법령	주요 내용	관련 부서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전 부서
하도급법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금지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구매부, 기술영업부, 생산부, 품질부, 공사부
상생협력법	•약정서 발급 및 물품수령증 발급의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납품대금 지급 •검사기준 설정 및 불합격 사실 통보 의무 •납품대금 부당 결정, 감액 금지 의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의무 •물품 구매 강제 금지의무 •발주 취소 금지의무 •원가자료 등 정당한 사유없는 경영상 정보요구 금지	구매부, 기술영업부, 생산부, 품질부, 공사부
영업비밀 보호법	•영업비밀 침해 금지	전 부서
약관규제법	•약관의 명시 설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금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금지 •고객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금지 •면책조항 금지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금지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금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금지 •의사표시 의제 조항 금지	구매부

PART 3. 공정거래법 해설

1. 공정거래법개관

1.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조사 및 심사절차

1	사건인지	▪ 직권인지 또는 신고(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입력
2	조사	▪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조사, 진술 요구 등 ▪ 조사방해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물리력 행사 시)
3	조사 후 조치	▪ 혐의가 없는 경우 : 심사관 전결로 종결 ▪ 혐의가 있는 경우 : 심사 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4	위원회 상정	▪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 피심인에게 심사 보고서 송부 후 통상 2~3주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5	위원회 심의 의결	▪ 일반인에게 공개, 피심인과 심사관이 상호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 의결서 작성 불복 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①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

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②합의추정제도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복멸이란 합의의 추정을 켜다는 의미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①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a.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격’이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

b.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 판매조건, 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개념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이란, 지급수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과 같은 개념

c.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d.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e.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

f.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g.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영업의 중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h.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②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사례

소형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03-03)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 B, C, D사는 2003.6.2.부터 2011.8.25.까지 국내 소형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 영역을 존중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1)가격유지 합의 및 실행

A와 B는 원재료인 강재 가격 및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영업책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소형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을 C, D에게 전달하고 실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들은 국내 주요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 및 대응방향을 공유하면서 주요 수요처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공동으로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합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 납품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저가로 견적을 제출하여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시장 점유율 공정에 관한 합의도 하였습니다.

(2)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A, B사는 2008년 원재료인 강재 가격 및 환율이 급상승하자 영업책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산업기계용 소형 베어링 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국내 C, D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요처별 가격인상률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제재

→ 과징금: A사 36억 6,800만원, B사 49억 1,200만원

*C, D사는 A, B의 100% 국내 자회사로서 A, B사의 합의에 단순 가담 또는 합의 내용 대행에 불과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주체가 아닌 점,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24-02-21)

■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B, C는 한국환경공단의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이전에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구체적인 투찰률을 합의(A 94.89%, B 94.90%, C 94.92%)하여 실행하였음.

■ 제재

→ 과징금: A사 26억 4,400만원, B사 5억 8,200만원, C사 24억 9,700만원

*C는 A, B와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공정위는 A, B가 C의 연락상대방을 기억못하고 있으나 B가 가격 경쟁 제한 합의를 제안하고, A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C에도 연락하여 의사의 일치를 확인하여 임원에게 보고후, 다시 3사간 구체적인 투찰률 합의를 지시하게 된 과정에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투찰률 합의에 참여한 A의 김모 부장, B의 라모 차장, C의 이모 차장은 평상시 교류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입찰 건의 일부 입찰 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③ 입찰담합의 유형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입찰가격 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금지 또는 범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 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 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 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행위

다. 판단 기준

-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b.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범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 간에 일정한 범위 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 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다. 판단 기준

-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은 입찰 시 사전에 수주 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수주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든지, 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나 기존의 수주와의 계속성이나 관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c. 경쟁 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범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 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며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 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 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d.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범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 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e.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범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등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 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④ 입찰담합 위반사례

2개 고무배합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3. 3. 28)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고무배합유의 유종별 특성상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라핀오일은 항오염성이 우수하여 신발류, 패키징제품 등에 사용되고, 나프텐오일은 항오염성, 탄성 등 고무제품에 균형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각종 튜브, 전선피혁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아로마오일은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나 오염성이 있어 색상이 문제되지 않는 타이어 등의 흑색 고무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고무배합유는 제조·판매사업자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K사의 승○○ 차장의 업무수첩, M사의 이○○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K사와 M사의 가격조정 요청공문, K폴리캠의 가격조정 품의서, M사와 K사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 K사와 M사는 2008.1.23.부터 2009.10.25.까지의 기간 동안 K폴리캠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인 파라핀오일(P-5) (이하 ‘P-5’ 라 한다)의 가격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조정가격과 조정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실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발주처인 K폴리캠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이 사건 고무배합유를 공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K사와 M사는 공동으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K사는 과징금 1억 22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한다.

2개 고무배합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3. 3. 28)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고무배합유의 주요 제조·판매사업자는 K사, M사, SH사 등이 있다. 이 중 M사와 K사 2개사가 약 70%의 시장점유율(국내, 수출 포함)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M사가 평균 약 44%, K사가 평균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판단

M사와 K사 공동으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M사는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K사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13개 건설사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1. 10. 22)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3개 건설사들의 협력 업체로 J코리아 등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는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판단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억 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조달청 발주 P팜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2. 08. 31)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K사와 D텍은 조달청의 1999년도 P팜 입찰이 있기 직전인 1998년 12월경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2L규격의 P팜 입찰에서는 K사의 들러리로 참여하고, 4L 규격의 P팜 입찰에서는 D텍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각각 예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K사와 D텍은 조달청의 P팜 입찰 시에는 2L와 4L 규격 제품의 입찰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물량이 더 많은 규격의 제품을 낙찰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일정 물량을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 사가 낙찰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공정위 판단

조달청이 발주하는 농약제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와 낙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25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다.

4개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 03. 31)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당공동행위 위반 시 제재

행정 적 제재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조치, 관련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 등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공표명령	
	입찰참가 제한	
형사 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도 처벌 가능
리니언 시 제도	1순위	과징금 전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
	2순위 이후	과징금 일부 감면, 형사고발 면제 가능
손해 배상 책임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집단 소송		

5. 부당한 공동행위 업무상 주의사항

1) 수주자(낙찰자)의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주의욕 등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 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 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찰가격을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가격에 대한 유의사항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업계모임 참여 원칙 및 프로세스

모든 구성원은 공정경쟁 자율실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의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업무수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업계모임 참여원칙

- “업계모임”이란 ‘회의’, ‘작업반’ 등 그 명칭이나 ‘정보’ 등 그 목적에 불구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는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와의 정기 또는 부정기 모임(일회성도 포함)을 말한다.
- 회사와 관련되는 공정거래법상 주요 담합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담합금지조항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율준수사무국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 ① 가격(입찰가격, 구매가격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담합
- ② 과당경쟁방지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담합
- ③ 거래조건 담합
- ④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담합
- ⑤ 제품, 용역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기로 담합

② 업계모임 참여 프로세스

- 모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별첨 2양식에 의한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 시 모임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 업무 가이드라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상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원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의문이 생기거나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CP Hot Line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사와의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

-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 어떤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
-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전을 받아 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1) 이의를 제기하고,
 - 2)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 3) 즉시 해당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도 남겨 놓을 것)
- 경쟁사와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입찰조건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 경쟁사와 향후 입찰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 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6. 부당한 공동행위 Check-List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가격 협의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 연락이나 정보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 조절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용찰금액, 용찰물량 등 입찰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거래상대방의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모임 참석	모임 참석 전, 자율준수프로그램인 업계모임참여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였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문서 작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 또는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 되어 있는가?		

3. 일반불공정 거래행위

1. 개관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 행위(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 ‘저해성’(법 제45조 제1항 본문), ‘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 당해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2.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1) :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의 유형	
공동의 거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단독 거래 거절	■ 사업자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상품·용역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위법성 판단기준

- a. 거래 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b. 거래 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c.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 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② 위반 유형

- ＝공급·구입 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부품 제조업자가 완제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재고부족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 거절에도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사업 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3.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2) : 차별적 취급

정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들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①가격·거래 조건 차별의 예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②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전적 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4.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3) : 경쟁 사업자 배제

정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① 부당 염매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고가 매입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하여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계속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기타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5.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4) : 부당한 고객 유인

정의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① 위법행위 유형

■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하는 행위

■ 자신과 경쟁 사업자의 영업 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6.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5) : 거래강제

정의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① 금지 행위 유형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 판매)
-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7.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6) : 거래상 지위남용

①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 가능성, 사업 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② 구입 강제

-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③ 이익 제공 강요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수요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④ 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거래 조건에는 각종의 구속 사항, 저가 매입 또는 고가 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 방법, 계약 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 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 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⑤ 경영간섭

- 임직원 선임·해임 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8.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7) : 구속조건부 거래

정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 계약을 모두 포함
- 경쟁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 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 상대방과 업무 제휴 시 경쟁사와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9.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8) : 사업 활동 방해

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방해 활동 네 가지 유형이 존재

① 기술의 부당 이용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 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②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이때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 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 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 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③ 거래처 이전 방해

■상대방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여기서 사업 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④ 그 밖의 사업 활동 방해

■위 행위 외, 자기 능률·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사업 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전달,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시정명령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②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③ 형사처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 가능

④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11.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22-08-24)

■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정식 발주서에 의한 구매가 아닌, 프로젝트별 예정수요 품목 및 수량을 장납기 리스트에 기재하여 A에게 공유한 후 구매팀 또는 일선 부서에서 품목명, 수량, 납기일, 납기장소 등을 기재한 선진행 요청◆이메일을 송부함으로써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았다.

대금지급은 매월 기성청구 마감일인 25일까지이며 청구된 건에 대하여 익월 29일 S이엔지의 결제조건에 의하여 지급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S이엔지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A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을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S이엔지는 S텍이 기한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3%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S이엔지는 S텍에게 지연된 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 공정위 판단

*S이엔지와 S텍 주식회사는 자동화설비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금지급기한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발주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은 후 자신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S이엔지는 자동화설비 부품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연을 가능하도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22-07-10)

■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P사는 2019.1.7 자신의 회사 퇴사 예정자를 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하였다. 2019.4.15 신고협력업체의 노동조합에서는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한 부정 급여 수령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9.7 B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였다. 2019.9.4에 공문으로 2019.12.31 로재정비 협력계약이 종료되며, 기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 공정위 판단

P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와의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임에도 2019. 7경 사전 통지없이 거래를 종료하였고, B에게 기본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서면통보 등 기본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점, 계약기간 중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B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약48,434천원 상당의 매출 감소)과 전담인력을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은 점, 이 사건 발주가 중단된 시점인 2019년 7월에 B는 P케미칼과 주계약이 계속 거래 중에 있었는데, 자신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P케미칼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 발주중단을 정식 항의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항변] P로부터 위탁받은 COG 정제용역 물량이 감소하여 화성공장 정비 물량이 감소 하였고, B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후 발주를 중단하였다.

COG 정제용역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B와 이 사건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B가 먼저 화성공장에서 전담 인력을 철수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 중단이 아니다.

이 사건 거래가 가스 정제용역과 관련된 배관용접 작업이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점을 고려할 때 노사문제로 안정적 조업 여부가 불투명한 B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다.

12. 불공정거래행위 FAQ

Question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등을 두어도 되나요?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할 때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즉,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거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uestion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타업체의 공급요청 거절이 위법인가요?

▶ 공급자가 A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요구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거나 거래거절의 목적이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여 경쟁사업자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 거래거절행위의 경쟁제한 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3.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사업자가 아닌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 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4. 부당지원행위 제재

① 시정명령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② 과징금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③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5. 부당지원행위 사례

와인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 사건(2021.6.17.)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롯데칠성(주)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자회사 MJA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와인 저가 공급 :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

-판촉사원 비용 부담 :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비)을 롯데칠성이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담

-모회사 인력 제공: 롯데칠성 지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MJA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행위 중지 명령)

→ 과징금 총 11억 8,500만 원

→ 고발(롯데칠성주)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022. 1. 27)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통행세 거래’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올품” * 지분 100%를 2세에 증여한 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하에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고가 매입 행위: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 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약 4년간 동물 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통행세 거래 행위: 계열 사료 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년간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주식 저가 매각 행위: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주)는 2013년에 본인 보유 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벤처판매(現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27억 원을 부당지원

→올품(舊 한국썸벤처판매주)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함

■제재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이랜드리테일의 변칙적인 자금 및 인력 부당지원 사건 (2022. 5. 16.)

■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이랜드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음

→이랜드리테일은 2016. 12.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 취득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설정되지 않았음

■ 이랜드리테일은 2014. 7. ‘SPA0’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으나, 자산 양도 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음

→이랜드리테일은 이관 대상 브랜드인 SPA0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양도 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을 양도하였음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음

■ 이랜드리테일은 2013. 11. ~ 2016. 3.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

■ 제재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6. 부당지원행위 FAQ

Question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나요?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Question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나요?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Question

용역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나요?

▶ 부당지원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있음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 자금지원행위 해당 가능

Question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지원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음(회계적 방법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경우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계열회사 이외에도 동종의 상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가 각 제공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음

PART 4. 하도급법 해설

1. 하도급법 개관 1.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하도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위탁’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포함)를 의뢰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 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용역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2.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 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 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

3.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의미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의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 해당

2.계약체결 관련사항

1. 서면 발급 및 ① 서면발급의무

보존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이때 발급의 기준은 양사 기명날인 시점이 됨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② 서면의 보존의무

▶하도급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함(단, 기술 자료 관련 거래 자료는 7년).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함(전자 문서도 동일)

▶ 보존 대상 서면 리스트

연 번	보존대상 서면	근거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
4	검사 결과 통지서	법 제9조
5	감액 서면	법 제11조
6	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서	법 제12조의 3
7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 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1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8호

③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 필요)

④ 계약 시 주의사항

-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 발행에 해당함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서면 지연 교부)에 해당함
- ▶실제의 하도급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함

2. 부당특약

① 서면발급의무

- ▶하도급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 “계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 관련사례

파인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부당특약 설정행위 (2023. 1. 17.)	
■행위 사실	→파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현장 설명서 및 공제 협약서에 ① 환경관리 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음- 그 밖에 파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도 함께 문제 되었음
■위법성 판단	→특약 ①의 경우,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특약 ②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 특약에 해당함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총 3,600만 원

4. FAQ

Question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의 도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우선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양당사자 기명날인된 정식계약서면은 추후 발급하여도 무관한가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 등 서면의 경우, 양 당사자 기명날인이 완료된 완전한 서면이어야 함 ▶일방 당사자의 인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업무 지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되므로 유의 ▶한편, 그러한 “완전한 서면”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급 완료되어야 함	

Question	어떠한 계약조건들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될 수 있나요?
	▶ 施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 이러한 부당특약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첨부 문서 등 포함) ▶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 금액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 일체 요구 불가 •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이외 공사비 증액 요구는 불가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 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전체 시공에 필요한 업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 금액 5% 미만의 경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3.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부당한 방법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이자(15.5%)를 지급하여야 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고객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구매강제행위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매 강제 행위 예시

-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4.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행위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개시,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 하도급 조정의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가능

▶하도급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 시에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필요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6.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① 조정협의 신청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신청 가능

② 조합의 협의개시 요건

▶아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위와 같은 협의 가능

- 하도급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③ 조정 협의의무의 발생요건 및 의미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무는 ‘원재료의 가격’ 이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건비 상승, 저가수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로는 인정 불가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지만, 원사업자가 그 조정 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④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 경우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의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 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7. 관련 사례

(주)유니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2023. 4. 7.)	
■행위사실	→ 유니크는 2019. 2. 27.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으나,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 1. 1. ~ 2. 26. 기간 동안 제도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감액하였음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지급명령(하도급대금 감액분 4,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 과징금 3,800만 원

(주)지에스리테일의 판촉비 등 수취 행위 (2022. 9. 7.)	
■행위사실	→ 성과장려금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16. 11.부터 2019. 9.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하였음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음 →판촉비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16. 11.부터 2019. 9.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 비용 중 총 126억 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고,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음 →정보제공료 수취 : 지에스리테일은 2020. 2.부터 2021. 4.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 원을 수취하였음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
■제재	→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 지급명령(하도급대금 감액분 4,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 과징금 3,800만 원

(주)홍성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2022. 7. 15.)	
■행위사실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 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 원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2,700만 원

동하정밀(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2022. 4. 28.)	
■행위사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동하정밀은 손해배상 청구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하였음 -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 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지급명령(하도급대금 감액분 101,606,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과징금 3억 2,900만 원

8. FAQ

Question	하도급 계약시 물가변동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관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나요?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법 규정과 당사자 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됨 ▶하도급법상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물가 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한편, 본건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물가 변동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침해(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하는 부당특약으로 인정 소지 있으므로 유의	

Question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은 변동없이 세부하도급단가를 일률적인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나요?
▶투찰금액 변동이 없었다 하여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불이익 발생 우려 존재 ▶따라서, 본건 질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Question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한 품목의 단가 단위를 절삭(10만원이하 단위 절삭 등)하여 하도급 금액이 일부감액 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부당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 원 이하 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4.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사항

1. 부당위탁 취소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
----	---

① 위법성 판단 기준

▶ 부당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 계약의 범위, 계약 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

▶ “임의로” 위탁취소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가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 위 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 등이 정상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③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당 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 하는 행위

④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2. 부당수령거부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

① 위법성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당반품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	--

①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 방법, 반품에 따른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② 부당반품의 예시

-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 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 변경·모델 단종·판매부진·재고 증가·보관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 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4. 목적물의 검사

① 목적물 검사 의무

- ▶ 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②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 검사 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 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 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5. 관련사례

(주)제넨바이오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3. 1. 6.)
■행위 사실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 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여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그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임 →그 밖에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문제 됨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주)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주)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2. 3. 31.)
■행위 사실 →2016. 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5. 수령하였으나, 398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하였음 →그 밖에 서면 미발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 문제 됨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2,000만 원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2022. 9. 16.)
■행위 사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4. 3.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음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 3 ~ 2020. 4. 수급사업자에게 20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음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6. FAQ

Question	현재 하도급계약 이행중인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소속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나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업체 재정 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 시는 반드시 ① 하도급계약에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②동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 해당 •계약상 해지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한 내용인지(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Question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현재 당사에 해당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급사업자에 양해를 구한다음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보낸 뒤이를 잠시만 보관하여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반품에 해당하나요?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함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반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 물품보관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음

5.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사항

1. 선급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 ▶법 위반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 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 만 지급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지연이자 등의 지급

- ▶선급금, 하도급대금을 위 지급 시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필요
-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 비율에 따름(2022. 4. 기준 연 15.5%)

③ 현금 지급 비율 및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불가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의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함

④ 중견기업에의 적용

- ▶하도급대금 지급 조항은 중견기업과 원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

3. 부당한 대물변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의미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 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대물변제 시 서면 교부 절차

- 원사업자는 변제 전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제공
- 변제 시 지체 없이 원사업자 자료 제시일, 자료 주요 목차,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은 사실, 양 당사자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교부

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 아래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예외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등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차감하여 지급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필요

5. 관련사례

(주)대우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행위 (2015. 9. 22.)	
■행위사실 -X(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2013. 1. 1.부터 2014. 11. 30.기간까지 37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문 건설공사, 전기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어음수수료 미지급) 2013. 1. 1.부터 2014. 11. 30.기간까지 100개 현장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8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2013. 1.1.부터 2014. 11. 30.까지 5건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100% 현금으로 수령하고, 외담대로 지급한 비중이 48.8 ~ 99.1%)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억 2,600만 원	

엠브이지토건(주)의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2023. 8. 3.)	
■행위사실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에 대해 건설 중인 세대를 할인분양(계약금 면제)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대물변제의 사유가 없었음 →그 외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젯아이씨(주)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 행위(2020. 8. 24.)	
■행위사실 →피심인은 의류 및 스포츠레저용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발 제조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신발 제조를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금형업체에게 신발 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였음. 피심인은 금형 제작 대금을 금형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재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	

6. FAQ

Question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라는 점 입증 필요 ▶한편,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요 행위는 절대 금지됨	

Question	수급사업자가 본인의 건설현장 노동자에 노무비를 미지급하고있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와 직접 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미발생 (노동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님)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Question	수급사업자가 하자 보증서를 미제출하여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 및 하자 보수용 자재대금 해당금액을 수급사업자 보증서제출시까지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姉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목적물 납품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증 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 보증서 등이 미제출 되어 그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는 상기 참작 사유 해당 가능	

Question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Question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Question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요?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그 만기일 이전에 부도 처리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해당(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6. 기술탈취 금지

1. 기술자료

▶기술 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위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 자료논의 정의		
항목	① 비밀관리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의	수급사업자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i)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ii)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iii) 기타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시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 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장비 제원, 시방서, 기계 운용 매뉴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연구 자료, 연구개발 보고서(실패한 연구 보고서 포함),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2. 기술자료는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②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③ 사전협의 및 관련 서면을 발급한 경우 기술자료는 요구를 허용하고 있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
- 공동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제품 하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 자료를 요구

▶원사업자는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법정 기재 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한편 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함. 일방 당사자의 서명·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취득한 기술 자료는 기술 자료 제공 요구서에 기재한 요구목적, 합의된 사용 범위 등을 벗어나 유용·유출할 수 없음

- 유용 :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 유출 : 제3자에게 제공

3. 유사 개념 :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불가

- 정당한 사유 : 위탁 목적 달성 위해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구가능

4. FAQ

Question	물품의 제작 도면은 기술 자료인가요?
▶도면의 기술 자료 여부는 자료의 명칭·형태·종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하도급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도급법은 기술 자료를 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② 제조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Question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료의 유용, 유출 해당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업체 입찰 제안서의 기술 자료를 직접 유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 유출한 경우 [유출] ▶수령한 기술 자료를 납품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유출] ▶사전에 정한 기술 자료 반환·폐기 기한을 위반하여 반환·폐기 없이 해당 자료 사용하는 경우 [유용] ▶납품단가 인하 또는 업체 변경을 위해 기존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거래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Question	기술자료 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	

7. 기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서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3.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기준

행정 적 제재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금지행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회복 조치 등
	과징금	하도급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등 중대위반 시 2배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의 감경(24.5.21) 시정명령 이행시 [최대50% + 조사협력 최대 20%]
	공표명령	과거 3년간 시정조치, 권고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을 초과하면 명단 공표 의무
	입찰참가 제한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
형사 적 제재	대금미지급	징역형 또는 벌금형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제 도	1순위	과징금 전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
	2순위 이후	과징금 일부 감면, 형사고발 면제 가능
손해 배상 책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발생 손해의 3배 미만 범위에서 배상 책임 부담
	기술유용행위	손해액의 5배 이내(24.2.1)

9. 하도급대금 연동제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물품등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때
- ②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 ③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적용대상 거래

- ①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 제조등을 위탁한 자
- ② 제조등의 위탁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 ③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3.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사항

- ①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 ②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미연동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성신헌의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의 의무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의 조정 의무
연동협의 서면 보존 의무

5.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구분	인센티브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6. FAQ

Question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 수급사업자는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게 분쟁조정을 신청	

Question	물품 계약 시 해당 협력사가 취급하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했을 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 (각각의 개별 품목 규모는 1억원이하이며, 통합 했을때의 규모는 1억원 이상인 경우)
▶ 연동제 적용은 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목적물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목적물(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Question	경쟁입찰 때 A,B가 경합하여 A가 단가가 더 낮아 A에게 물량을 주고 제조위탁 계약을 하였는데 A가 원재료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용해야 하는지?
▶ 최저가 입찰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되고 연동제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낙찰 계약 원재료 비용이 증가했다면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연동산식에 맞추어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서설

1. 납품대금연동제 법안 개정(상생협력법)

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최근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는 문제로 이번 기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1. 납품대금연동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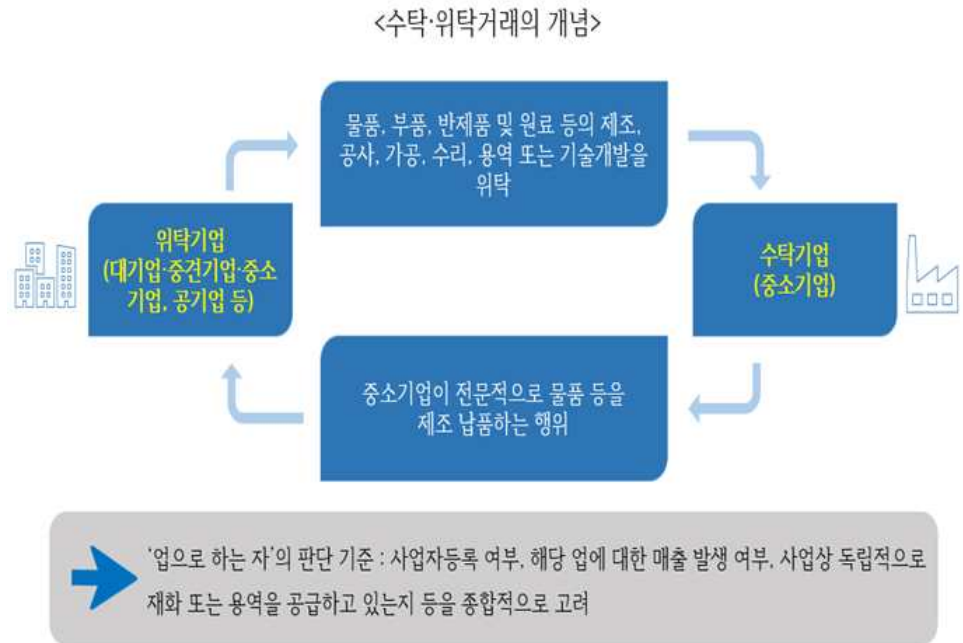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적은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위탁기업(의무자)이 연동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재하여 사전에 발급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조 제 13호)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조 제 12호)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 수탁●위탁거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 제조,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의 예시를 포함한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 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용어의 정리

1.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2. 수탁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소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3. 주요 원재료

-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한다.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④ 수탁기업이 위탁 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4. 연동 대상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다만, 해당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5.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한다.

6. 원재료 기준 가격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시점의 연동 대상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7. 조정 요건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

8. 조정 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9.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10. 조정대금 반영일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특별약정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납품대금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예)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5,000원

4. 납품대금 연동 절차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 납품대금의 조정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 등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3. 「납품단가 변동표」의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한다.
-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사항에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을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서류의 비치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와 부속되는 「납품대금 변동표」 및 「납품대금 변동표」를 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상생협력법 제 39조)

5. 납품대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 사항에 충분히 협의하여 약정서에
약정서 작성방법 기재해야 한다.

1. 물품 등의 명칭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위탁한 물품 등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 ② “물품 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을 말한다.
- ③ 품목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한다.
- ④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2. 연동 대상 원재료

- ①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
- ② 다만,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요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 주요 원재료 :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④ 이외 “연동 대상 원재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해당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
 -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
- ②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합의한 재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합의하여 정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①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
- ②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한다.
- ③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조정요건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으로 기재
예) 조정요건을 $\pm 3\%$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였다면,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6. 조정주기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 ②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7. 조정일

- ①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 ②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 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을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8. 조정 대금 반영일

- ①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 ②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③ 연동 대상 원재료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①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 ②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시

- 1)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5,000원

- 2)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2kg) + 10,000원

- 3)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
+ 기타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x
반영 비율(100%) x 동 중량(10kg)>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 동 중량: 10kg

5)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x (1 + 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x
단가 변동 비율(50%))

10. 기타사항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기준 등)

6.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 예시

1. 연동 대상 원재료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물품 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연동 대상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간)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 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 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 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 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 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 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 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x 알루미늄 중량 (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중량(0.1ton)) + 5,000,000원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물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3,300\text{천원/ton} \times 1\text{ton} + 10,000\text{천원/ton} \times 0.1\text{ton} + 5,000\text{천원} = 9,300\text{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3,000\text{천원/ton} \times 1\text{ton} + 12,000\text{천원/ton} \times 0.1\text{ton} + 5,000\text{천원} = 9,200\text{천원}$

2. 한 건의 수탁 · 위탁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물품 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2. 연동 대상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Cu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최종 납품 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물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 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 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1\text{ton} \times (10,500\text{천원/ton} + 500\text{천원/ton(가공단가)}) = 11,000\text{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23년 6월 1일

3.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방법

1) 특별약정 체결시 납품단가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물품 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

예)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0원(단위 : 1개)

②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

예)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000원(단위 :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

2)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조정 일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10,000천원/ton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예)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3)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예)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조정대금 반영일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 조정일인 '23년 1월 1일에 납품

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일인 '23년 1월 1일을 기재

4)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①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

예) 예컨대 조정일이 '23년 1월 1일이고, 비교시점이 '22년 12월인 경우, '22년 12월의 원재료 기준

가격을 기재

②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한다.

③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0원(단위:1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 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3년 2월 1일	11,000천원/t on	104,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3년 3월 1일	12,000천원/t on	108,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6. Q&A로 이해하는 납품대금연동제

1.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 납품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 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3.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4.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하 생략)

5.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주요 원재료란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6.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예시) 계약상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7.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8.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10. 대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 대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참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2.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1, 2차 협력사(위탁기업)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3.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일인 '23년 10월 4일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MRO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지?

-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위탁 거래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미연동 합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 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 가격을기준 지표로 설정하거나,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 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 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 물품을 납품할때 소용되는 운반비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경비 성격으로서 원재료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참고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18. 화물운송용역 위탁 시 운송업체의 유류비도 원재료인지?

-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9.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 **페인트 도장공사를 공사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한 경우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물품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기준 지표 및 ⑤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통령령 위입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23. 10.)

구분	내용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④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 **기준시점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서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비교시점이란**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년 1월 1일'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인 '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년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 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만일,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반면,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시점의 기준 가격은 약정체결일('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평균 가격',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22. 조정요건 $\pm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pm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pm 10\%$ 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pm 10\%$ 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 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24.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25.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X 원재료 중량(kg/EA) X 반영비율(100%)]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기존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예시) 29,000원/EA = 25,000(원/EA) + (2,000(원/kg) * 2(kg/EA) * 1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존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기타 원가 구성 내역은 가공비 5,000원으로 가정

※ 변경 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 (예시) 29,000원 = 12,000(원/kg) X 2(kg) + 5,000(원)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존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26.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7.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약정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사용을 권장하는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8.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29. 수탁기업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생협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탁기업과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30.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31.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2.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참고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33.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은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5.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36.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7.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등과 함께 각 처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38.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3호2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9.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 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40.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간의 관계는?

-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유 (다만,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41.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예시) 원사업자가 연동약정서 발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 또는 금액을 조개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43.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조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방안은?

-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 가능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44.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5.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 생략)

46.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위반인지?

-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7.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8.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동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이메일(med@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 (관련 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9389>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02-368-8470, 8969, 8962, 8963

<제출서류>

- 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④ 사업자등록증

49.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용 95% 적용)
-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23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② (공통) 하도급법 별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 ①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50.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1.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2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별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관련 참고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지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 - 시범운영 참여(1.0점), 상시모집 참여(0.5점)
	2.5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③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참고 및 주의사항		1. 총 합산점수는 3점 이내에서 인정 2.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실적 증빙 서류를 동반하여 제출(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된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 * 납품대금 조정 관련 품의서 등 결재서류, 단가 조정 전후 자료 등 3. 운영 실적은 납품대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만 반영 -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대금 총액 대비 인상 지급한 대금 비율에 따라 차등화 - 10% 이상 0.15점, 10% 미만 0.1점 4. 조정협의 제도 실적 자료의 경우 실제 단가 조정 및 협의 과정 전반이 상세하게 제출된 자료만 인정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3 3.가.9) 및 10)>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

-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

-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

52.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시기는?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7.4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10.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7.4일부터 시행되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성실한 협의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위탁의 취소·변경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은 10.4일부터 시행됩니다.

PART 6.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

1. 서설

1. 개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발주처 등), 위반행위자인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더하여 회사 역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과징금액 상당액, 그리고 ②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상당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역시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행사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기소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 대리점법 제33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 대규모 유통업법 제42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만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 위반 행위를 억지한다는 제재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예컨대 2003 ~ 2011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66건이었으나, 2018 ~ 2022년까지 불과 5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무려 234건으로 연 평균 기준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이에 더하여 ① 2013년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 고발요청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동향

▶과거에는 개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행위 자체가 행위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대체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특히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3. 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1. 개요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발주처 등), 위반행위자인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더하여 회사 역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과징금액 상당액, 그리고 ②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상당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역시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최근에는 특히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원을 상대로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관여 임원 개인’이 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 279347 판결), 관여 임원 10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억 9,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3. 일선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위와 같은 임원 이외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는 사례 역시 확인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대학교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SI팀의 팀장 및 같은 팀의 팀원’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팀장의 경우 1,200만 원의, 팀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48719 판결).

PART 7. 최근 정책동향 및 주요제재사례 모음

1. 최근 정책동향 2024년 주요 정책 동향

1. 최근 정책동향 언론 모니터링 리스트

내 용		일시
1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4.02.01
2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4.04.01
3	2024년 공정거래 정책 전망과 시사점	‘24.04.02
4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24.05.21
5	공정위, 과징금 처분사건은 ‘늘고’ 액수는 절반으로 ‘줄고’	‘24.05.22
6	나이키도 한국에서 갑질하면 처벌 추진한다.	‘23.05.09
7	유럽발 ‘ESG규제’ 본격화 한국 기업에 리스크?	‘24.04.28
8	‘점수 미달 땀 납품 못한다’ 현대차 파격 결단에 ‘초 긴장’	‘24.06.09
9	공정위, 독점유발하고 경쟁막는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24.05.01
10	‘건설업계 특성, 업계 의견 반영한 특화된 납품단가연 동제 연내 이런한가정 공정위 위원장 인터뷰	‘24.06.28
11	불공정 거래관행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24.06.28
12	컴플라이언스와 인센티브 -이외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 이평)	‘24.06.29

2.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2.1.)

관계법	하도급법 제35조
개정배경	기술유용 행위 억제 및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지속 발생 기술유용에 대해 최대 2배 배상만 인정하는 등 과소 배상 경향 有
개정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가능
기대효과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새로 도입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3.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추진계획(2024.4.2.)

납품단가연동제 감사강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탈법행위(예: 쪼개기계약, 납품대금 미연동 강요 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	
하도급 분야 역점 정책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 집중 감시	
	수급사업자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	부당특약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
		자진시정시 과징금 70% 감경 시행령 개정
		분쟁조정절차운영 강화 (90일기한, 소송비용 절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운영 점검 강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구두계약관행,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추진	기술자료 유용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민사 가처분을 통하여 신속히 침해행위 금지를 도모하는 '사인 금지 청구제'를 새로운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도입 추진	
공정위-검찰 간 업무협약체인 공정거래사법협의회 강화	①'담합,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②'심각한 반칙행위 원칙적 고발 및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등 ③전속고발제도의 개선과 공정위-검찰 간 협력 강화' 공정위와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및 검찰 총장의 고발요청 제도'를 상호 보완하면서 경쟁, 법 집행 과정상 상호 견제 및 협력 관계	

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4.5.21.)

개정배경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정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 낮음.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
개정내용	-하도급법 관련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정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대효과	기존에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 개정으로 위반업체가 ‘소송에 갈 바에는 과징금을 줄이고 피해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

5.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024.7.3.)

주요정책방향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 강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기간	-원사업자 24.6.28~7.31 -수급사업자 24.8.26~10.6
		내용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하도급대금연동제 도입현황
		목적	-향후 법위반행위 감시, 제도개선 활용 -하도급대금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 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 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
담합 단속 강화	담합 문제가 물가를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20년 137건, 21년 138건, 22년 149건, 23년 189건)		
건설하도급대 금 지급규정 위반 제재 강화	-공정위 지급명령 불이행 땀 법인 대표자도 벌금 부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배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 준수		

2. 주요제재사례 1.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사례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제재조치
담합	디비(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305억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과징금 12억원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혐의.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포착	구속 24.7.5
부당지원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입찰담합) 등 혐의로 기소 주요 감리업체들은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68명기소 7명 구속 24.7.30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맡도록 부당지원해 2012~2019년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MJA와인을 지원하고, MJA와인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남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제기 →벌금 1억원